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가능일 안내

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**재고용 외국인근로자**와 성실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시는 경우,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**"3개월 이전" 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**

업무 인수인계 등 사업장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, 성실 근로계약 신청 가능 시점이 재고용 만료 '1개월 전'에서 '3개월 전'으로 변경('17.6.7.)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니,

성실 고용허가 신청을 원하시는 사업주는 **관할 고용센터에** 아래 서류(붙임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서 신청서
2.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사용자·외국인근로자 서명 필요)
3.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
4. 출국예정신고서

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식은 **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**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붙임 :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등 서식 일체

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